

과징금의 부과기준(제10조의4제1항 관련)

1. 일반기준

- 가. 과징금은 1일당 과징금의 금액에 사업의 정지나 제한 일수를 곱하여 산정하고, 이 경우 1개월은 30일을 기준으로 한다.
- 나. 1일당 과징금의 금액은 위반행위를 한 사업자 등의 연간매출액(사업 제한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시·군·구 지역의 연간매출액으로 한다)을 기준으로 제2호가목의 표에 따라 산출한다.
- 다. 연간매출액은 전년도 1년간 총매출액으로 한다. 다만, 신규 사업이나 휴업 등으로 연간매출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하여 연간매출액을 산정한다.

2. 과징금 산정 방법

등 급	연간 총매출액(단위: 원)	1일 과징금액 (단위: 천원)
1	5억 이하	13
2	5억 초과 ~ 10억 이하	32
3	10억 초과 ~ 25억 이하	64
4	25억 초과 ~ 50억 이하	160
5	50억 초과 ~ 75억 이하	320
6	75억 초과 ~ 100억 이하	480
7	100억 초과 ~ 200억 이하	640
8	200억 초과 ~ 400억 이하	1,280
9	400억 초과 ~ 600억 이하	2,560
10	600억 초과 ~ 800억 이하	3,840
11	800억 초과 ~ 1,000억 이하	5,120
12	1,000억 초과 ~ 1,500억 이하	6,400
13	1,500억 초과 ~ 2,000억 이하	9,600
14	2,000억 초과 ~ 2,500억 이하	12,800
15	2,500억 초과 ~ 3,000억 이하	16,000
16	3,000억 초과	19,200